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46
----------	-----

2021. 3. 23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3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3월 12일

-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용식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○ 법령상 근거 없는 “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” 자구 삭제

나. 주요내용

○ 제24조(실적보고) 제4항

-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유발생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 - 현행 조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2017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관내 11개 시·군을 대상으로 실시된, 감사원 감사에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지적되어 개선 통보를 받았던, 현행 조례 제24조제4항의 ‘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’을 삭제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4조에서,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.
 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,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세무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.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.

□ 행정규제기본법

제4조(규제 법정주의)

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(上位法令)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또는 조례·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전문적·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

제5조(규제의 원칙)

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·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서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현행 「지방재정법」에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불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 취소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, 보조금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.
- 따라서, 현행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‘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’은 현행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규제 법정주의에

어긋날 뿐 아니라, 다소 과한 제재로 규제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,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.

현행	개정안
제24조(실적보고)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	제24조(실적보고)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

<참고> ※ 충청북도 도비 보조사업 현황

- ('18년도) 862개사업 / 2,171억원
- ('19년도) 914개사업 / 2,488억원
- ('20년도) 949개사업 / 3,008억원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646

제출연월일 : 2021년 3월 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법령상 근거 없는 “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” 자구 삭제

2. 주요내용

- 제24조(실적보고)제4항
-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삭제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실적보고) ①~③ (생략)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	제24조(실적보고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4항 중 “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”를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근거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32조의6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37조의3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)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도 조례

제24조의1(실적보고)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